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심결 사례 해설

김길태/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과 서기관

1 8개 증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95.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11단체1033

사건내용 LG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서증권(주), 대신증권(주), 쌍용투자증권(주), 한신증권(주), 선경증권(주), 삼성증권(주) 등 8개 증권회사들은 LG증권(주)의 요청에 따라 95. 9. 26 음식점 거버너스체인(영등포구 여의도 동 여의도 63빌딩 소재)에서 채권 인수 담당 임원 모임을 갖고 채권 인수와 관련한 과당경쟁 방지와 채권 수수료를 최저한도 설정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LG증권(주)의 채권 인수 담당 임원이 자사의 채권 인수 수수료를 최저한도 설정 내용과 이에 관한 사규(社規) 작성 계획을 설명하자, 여타 증권회사들도 이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후 이 모임에 참석했던 임원들은 자사의 채권 인수 담당 실무자에게 채권 인수 수수료를 최저한도 설정과 이에 관한 사규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를 받은 8개 증권회사들의 실무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증권회사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 채권 인수 수수료율의 최저한도를 채권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보증)의 경우는 0.2%, 회사채(무보증)의 경우에는 0.3%, 특수채(공사채)의 경우에는 0.2%, 카드·리스채의 경우에는 0.1% 등으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하고, 8개 증권회사들은 95년 10월 중순부터 월말까지 사이에 이를 사규 또는 지침으로 확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95. 11. 1.부터 이를 적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8개 증권회사 채권 인수 담당 임원들이 채권발행 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채권 인수에 대한 대가(代價)인 채권 인수수수료의 최저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모임을 갖고 채권 인수 수수료의 최저한도 설정에 대해 뜻을 같이 한 후, 각각 자기들의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실무자간 정보 교환을 통해 최저한도액과 그 시행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자기 회사의 사규나 지침 등으로 만들어 실행하였으므로, 이는 채권 인수 수수료의 결정에 관한 공동의 의사합치인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아울러, 8개 증권회사들이 국내 채권 인수시장에서 총 채권 물량의 64%를 인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채권 인수 수수료의 최저한도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내 채권 인수시장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8개 증권회사들의 행위는 국내 채권인수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증권회사들에게 공동으로 채권 인수 수수료율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 국내 채권 인수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8개 증권회사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각 사별로 사규 등으로 정

한 채권 인수 수수료를 최저한도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합의사항 파기명령을 하였다.

아울러 본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최고 16백만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본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본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의 과징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해설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 인수 수수료'란 증권회사 등의 채권인수 기관이 채권 발행 주체부터 채권을 인수받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채권의 권면금액에 채권인수 수수료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 채권 인수 수수료에는 청약안내 등의 발행 경비와 회사채 수익률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채권 인수 수수료는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92. 6월부터 사채발행 인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왔으며, '93년도부터 자율화조치가 이루어져 이후부터는 각 증권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여 받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화 조치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채권 인수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어 각 증권회사들의 영업 수익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8개 증권회사들은 본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으로 채권 인수 수수료의 최저한도율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이 처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정부가 채권 인수 수수료부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번에 이 부문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심결례로는 '93년에 있는 28개 은행들의 은행 수수료 관련 공동행위가 있다.

이 때에도 정부가 각 은행에서 받고 있는 송금

수수료 등의 은행수수료에 관하여 규제를 해 오다가 이를 자율화하여 각 은행별로 수수료를 결정하여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은행들이 모임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종류별로 동일한 수준으로 받기로 결정한 후 이를 시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국내 28개 은행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각 은행들이 이를 시정함에 따라 현재는 각 은행별로 송금수수료라든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기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종류별로 어떤 은행은 특정의 경우에 해당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종류별로 수수료가 싸거나 또는 비싸게 받는 등 각 은행마다 자기들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개별 법률 등을 통하여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 오다가 부분적으로 이를 자율화한다든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허가, 신고 수리,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간여하여 규제를 해 오다가 이를 자율화하여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규제를 받아왔던 사업자들은 정부규제로 인해 경쟁을 모르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공동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어렵게 되는 등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왜곡될 여지가 많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정부규제완화의 소기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규제가 완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여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본건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묵시적으로 은밀하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이 추정조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일물일가법칙(一物一價法則)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상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업자들은 자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자의 주장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업자들이 대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거나, 여타 사업자들과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건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각사가 정한 채권 인수 수수료를의 최저한도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파기명령은 공동의 합의로 결정한 채권 인수 수수료를 최저한도로 말미암아 현존하는 국내 채권인수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최저한도를 설정한 사규 등을 수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의 합의로 정한 채권인수수료의 최저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켜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난 후에는 공동의 합의로 결정한 최저한도가 그대로 지켜지거나, 그 최저한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최저한도가 지켜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흔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합의사항 파기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에 따라 각 회사별로 다시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인상은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당초의 가격 인상 폭과 동일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파기명령은 공동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일정하게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현존하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다시 결정해도 당초에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이나 그 가격 수준과 동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파기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경쟁의 결과 나타나게 되는 일물일가법칙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의사항 파기명령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벌칙을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참존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사건내용 (주)참존은 대리점들과 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지정한 지역내에서만 판매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후, '93. 8월, 마포대리점이 자기가 지정한 영업 구역 밖으로 상품을 유통시키자 유출을 이유로 경고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93. 9월에는 자기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기가 지정해 준 영업 구역을 벗어나서 판매하는 부정유출 행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대리점들로부터 공탁금을 징수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탁금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또한 (주)참존은 대리점들과 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규정하면서 “갑”의 영업 방침을 위배하였을 때, “기타 ‘갑’이 판단하여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으로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분쟁 발생시 소송 관할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본 약정에 따른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주)참존은 대리점별로 대리점의 영업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영업 구역내에서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후, 이를 어기는 경우에 경고조치나 공탁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래약정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 구역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의 사업활동 자유를 구속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참존이 대리점의 영업 구역을 제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 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주)참존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하여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쌍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 관할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자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주)참존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즉 대리점들은 (주)참존과 일단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개시한 이상 투자자본의 회수 문제라든가, 미수금의 정리 문제, 새로운 거래처 선택을 위한 투자자금 소요문제 등으로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참존의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조치내용**》 본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참존에게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중지명령을 하였으며, 아울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다.

해설 본건의 경우에 특징적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 내용중 (주)참존이 대리점에게 자기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요구해오다가 대리점이 이를 어기고 타사 제품을 취급하자, 이를 이유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당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에 관하

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여 문제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 왜 문제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에게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 데,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해지(거래중단)사유나 그 절차 등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 즉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를 보면, (주)참존이 속해 있는 국내 화장품 판매시장은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메이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참존의 국내 화장품 판매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까닭에 (주)참존이 대리점들과 거래함에 있어서 타 사제품 취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국내 화장품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다.

즉 본건의 경우와 같이 브랜드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리원칙에 의해 판단해 볼 때,

브랜드내의 경쟁을 다소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건에서 문제가 된 대리점의 영업구역 제한과 관련하여 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통틀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은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그의 영업 지역이나 그가 거래할 거래 상대방의 선택 등은 그 거래 상대방이 자기의 영업 전략과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서 부당하게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1995.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11조2일1037

사건 내용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 함)는 (주)고합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 인입통신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면서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기(工期)가 28일 내지 106일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간접 경비(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46백여 만원을 반영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고, 분당 아탑전화국신축공사 등 17개 건축현장에 소요되는 엘리베이터를 (주)중앙엘리베이터 등 5개 업체에 제작·설치하게 하면서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21일 내지 333일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간접 비용을 반영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한국통신은 '89년에 사업지원단 서울지부 주치장 등의 설계용역을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한 후, 이 사무소가 이를 완료하여 '90. 2. 19.자로 이를 납품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변경허가를 얻었으나, 본 건물 이 수도권권비정책의 관계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건축 허가를 필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보류하고 계약자에게는 건축허가 미필을 이유로 '90. 3. 11.부터 현재까지 용역 대금중 일부인 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성정보통신(주) 등 3개사와 TDX-10(교환기) 국간중계설비 등의 구매에 관한 확정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기의 사정으로 납기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급 물량 일부를 발주 취소하고, 그 삭감된 물량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한국통신은 음성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정보 이용료 회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함에 있어, 자기에게 위임하여 조치된 민원에 대하여는 자기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통신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한국통신의 귀책사유로 공기 및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실비(간접비용)를 보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와 설계용역 발주 이전에 당해 건물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위반되어 부속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부속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없이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구매 취소 사유가 한국통신의 귀책사유에서 기인된 것이고 대상 물품이 한국통신에게만 소요되는 것이므로, 발주 물량을 한국통신이 구매하여 다른 수요 부문에 사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주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음성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정보 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위임되어 조치된 민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제3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 자기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한국통신은 국내전화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로서 통신(전신전화)업과 관련된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고, 국내 건설시장에 있어서는 대규모 수요자의 위치에 있는 반면에, 이들 시장에 참여하는 계약상대방은 한국통신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영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한국통신 이외의 다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통신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에게 자기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기 및 납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을 부당하게 보전해주지 않거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에 있어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 명령을 하였다.

또한 정보 이용료 회수대행계약체결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관련 조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

지 않도록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범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하였다.

해설 한국통신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증진 차원에서 일정한 분야에 대해 독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 그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할 개연성이 크며, 실제로 본건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거래상대방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행하고 있음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서는 마땅히 달리 대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민간 부문의 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난 해부터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도 그 일환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건이다.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에는 ①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구입 강제 행위와 ②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익제공 강요 행위, ③거래 상

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④기타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제공 행위, ⑤거래 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영 간섭 행위 등의 5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는 달리 어떤 행위를 한 쪽이 행위를 당한 쪽보다 반드시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해야만 위법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열거한 5가지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상의 지위만 있으면 위법한 행위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가 앞에서 열거한 5가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에서 위법성 판단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부당성'이나 '강제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어떤 행위가 앞에서 열거한 5가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상의 지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로 된다는 것이다.

4 (주)금호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1995. 11. 1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10조총925

사건 내용 (주)금호는 자기의 「곡성 공장 원재료 자동 창고 입출고 시스템」(이하 “자동입출고 시스템”이라 함)은 용과 관련하여 자동 주유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94. 9. 26. 자동입출고 시스템에 설치되는 스택커 크레인(Stacker Crane) 6대의 자동 주유장치를 일괄해서 외주하기로 결정한 후, '94. 11. 25.자로 자기의 계열회사인 (주)금호건설과 비계열회사인 삼한기업에게 각각 자동주유장치의 사양 및 시방서를 송부하고 견적서(1차)를 제

출하도록 하여 가격 협상을 한 결과, 비계열회사인 삼한기업의 납품가격이 계열회사인 (주)금호건설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94. 12. 9.자로 삼한기업을 적격 납품업체로 확정하고 '94. 12. 15.자로 '95. 1. 15.까지 납품할 것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주)금호는 납품업체를 계열회사인 (주)금호건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94. 12. 18.경 삼한기업에 대한 납품 지시를 취소하는 한편, (주)금호건설로 하여금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94. 12. 28.자로 이를 제출받았으나 그 견적금액이 당초 삼한기업과 협상한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주)금호건설로 하여금 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주)금호건설이 '95. 1. 18.자로 견적 금액을 당초 삼한기업과 협상한 금액 수준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자, '95. 1. 19.자로 자동 주유장치의 납품업체를 삼한기업에서 (주)금호건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95. 1. 20.자로 자동 주유장치의 납품 금액을 당초 삼한기업과 협상한 금액으로 하여 계열회사인 (주)금호건설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주)금호는 자동입출고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동 주유장치를 발주함에 있어, 계열회사인 (주)금호건설과 비계열회사인 삼한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과, 동 자동 주유장치의 전문업체인 삼한기업이 적격 납품 및 설치업체로 인정됨에 따라 이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한 후 주문서를 발송하여 납품 지시를 하였으므로, 일단 (주)금호와 삼한기업간에는 거래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삼한기업에 대한 납품 지시를 취소한 후 계열회사인 (주)금호건설로 하여금 다시 2차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견적 금액이 삼한기업과의 협상가격과 거의 일치하게 되자, 당초 삼한기업과의 협상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주)금호건설과 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본건 (주)금호의 행위는 비계열회사인 삼한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금호가 삼한기업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주)금호의 행위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금호에게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등의 거래거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백만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 누구와 거래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기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전략,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영업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3자가 이에 간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업활동의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는 공정거래법으로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본건의 경우와 같이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개시 거절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래 개시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당해 행위에 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 개시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행위에 부당성이 없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을 기초로 살펴보자.

본건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자기의 계열회사에 주기 위해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라든가, 거래 개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로부터 각각 견적서 등의 업체 선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결과 객관적으로 비계열회사가 더 적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는 경우, 계열회사로부터 비계열회사가 제출한 견적 가격 등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때까지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열회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비계열회사를 부적격업체로 해서 비계열회사와 거래 개시를 거절하

는 경우, 그리고 거꾸로 비계열회사로 하여금 계열 회사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견적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계열회사를 적격업체로 하고 비계열회사와 거래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약하면 거래 개시 거절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용인되나, 다만 그 행위가 부당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문제시 된다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이러한 부당성과 관련하여 판단한 것을 보면, 거래를 개시할 사업자를 선정한 후 주문서까지 발송하였으므로 이를 접수한 사업자는 자기가 그것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납품 준비를 해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다시 발주했다는 점에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납품 준비를 해 오던 사업자는 납품 기한내에 이의 납품을 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하거나 다른 수주 기회를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발주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수주 기회 상실은 물론, 그 동안에 발생된 투자비나 인건비 등의 제반 경비의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파스퇴르유업(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1995. 12. 1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12광고1180

사건내용 파스퇴르유업(주)(이하 “파스퇴르유업”이라 함)는 최근 ‘고름 우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과 (사)한국유가공협회(이하 “한국유가공협회”라 함)가 서로 허위·비방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당해 광고 행위 중지, 범위반·사실 공표 및 과징금 납부)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자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유가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범위반 사실을 공표문으로 작성하여 '95. 12. 11.자 국민일보 광고란에 5단×37cm로 1회 게재하자, 파스퇴르유업은 '95. 12. 14.자 한국일보 및 '95. 12. 15.자 한겨레신문을 이용하여 “한국유가공협회가 파

스퇴르유업측에 대하여 부당 광고한 사실을 자인한 광고”라는 제목 하에 한국유가공협회의 공표 문안을 복사하여 동일한 규격(5단×37cm)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광고를 하면서 한국유가공협회의 범위반 사실의 공표문 중 “파스퇴르유업에 대한 비방 광고”라는 부분에 한국유가공협회의 당초 공표문에는 없었던 붉은색 밑줄을 그어서 강조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범위반 사실의 공표’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범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파스퇴르유업이 이를 임의로 광고 등에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의 ‘고름 우유’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95. 11. 14.자로 심의·의결을 거쳐 양측의 고름 우유 관련 광고 중 허위 및 비방 광고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하면서 범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파스퇴르유업은 ’95. 12. 15. 현재까지 범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유가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범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에 대하여 부당 광고한 자인광고임”이란 표현과 함께 한국유가공협회의 범위반 사실 공표문을 자신의 광고에 인용(引用)·전재(轉載)한 광고 행위는 고름 우유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 양측에 내린 시정명령 등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모르는 일반 소비자로서 하여금 한국유가공협회만이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허위 및 비방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로 인정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고름 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한 파스퇴르유업의 광고 표현과 관련하여 “자기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으나 타 회사는 고름 우유를 팔고 있음을 암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 행위”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파스퇴르유업 자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우유는 고름 우유이다.”라고 비방광고한 부분에 대해 신문에 공표한 사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한국유가공협회가 주장하는 “파스퇴르우유가 고름 우유”라는 광고 내용은 허위이고 파스퇴르유업이 주장하는 ‘경쟁사업자가 고름 우유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광고한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정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에게 경쟁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범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을 이행한 내용을 자기 광고에 인용(引用)·전재(轉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중지 명령을 하였다.

또한 자신이 비방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쟁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가 허위 및 비방광고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범위반 사실을 공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마치 한국유가공협회만이 허위 및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중지명령과 더불어 이를 통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우유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중지 명령을 하였다.

아울러, 본건 파스퇴르유업의 범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범위반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37cm 크기로 각 1회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과 함께 파스퇴르유업의 법인과 회장,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

해설 본건은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지명도가 비교적 낮은 신문의 광고란을 이용하여 공표하자, 그 공표문을 그대로 전재·인용하여 자신의 제품에 관한 광고와 함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표문을 게재한 신문보다 지명도가 높은 신문의 광고란을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본건은 당초에 파스퇴르유업이 '고름 우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속에 '고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는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 다른 우유제조회사들이 생산한 우유의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유가공협회가 이에 맞서 파스퇴르유업의 논리대로라면 파스퇴르유업도 '고름 우유'라는 식으로 광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파스퇴르유업측이나 한국유가공협회측에서 고름 우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가 허위 또는 비방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측 모두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과 범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 등

의 시정조치를 하였다. 특히 양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양측 모두의 법인과 행위자인 대표이사, 회장 등을 검찰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범위반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그 법적 의미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위반사업자에 대한 하나의 행정제재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범위반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당해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어느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지 등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제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하여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신문에 한국유가공협회의 범위반 사실에 관한 공표문을 인용·전재하여 광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성신양회공업(주)의 차별적 취급 행위에 대한 건

1995.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12조1이1126

사건 내용 성신양회공업(주)는 '94. 1월부터 '94.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제조에 소요되는 벌크시멘트를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계열회사인 (주)진성레미콘으로부터는 제품 출하 후 평균 27일 후에 평균 95일 결제어음으로 수령(판매 대금 결제 소요 일수: 122일)하는 반면에, 비계열회사인 (주)부

국래미콘등 9개 회사로부터는 결제 기일이 66일~91일인 어음으로 대금을 먼저 수령한 후 제품을 출하함으로써, 판매대금 결제기간에 있어서 계열회사에게 비계열회사보다 31일~56일간을 유리하게 해 준 사실이 있다.

또한 성신양회공업(주)는 '94. 1.~'95. 3. 기간 동안 레미콘 제조에 소요되는 골재를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열회사인 성신산업(주)에게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평균 24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계열회사인 (주)강암 등 6개 회사에게는 결제 기간이 대금 청구일로부터 평균 101일~112일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매입대금 결제기간에 있어서도 계열회사에게 비계열회사보다 77일~88일간을 유리하게 해 준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성신양회공업(주)가 벌크시멘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보다 유리하게 해 준 사실과 레미콘 제조용 골재를 구입함에 있어 구입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보다 유리하게 해 준 사실에 대하여 성신양회공업(주)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대금 결제조건 및 구입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차별취급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신양회공업(주)에게 레미콘 제조용 벌크시멘트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그리고 레미콘 제조용 골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결제 기간에 관하여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백만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해설 성신양회공업(주)는 기업집단 성신양회의 주력회사로서,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건이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는 경쟁력이 없는 계열회사를 지원함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비계열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당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시켜오고 있다.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 첫째, 대금결제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본건의 경우 처럼 어느 계열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의 계열회사와 자기의 계열회사가 아닌 비계열회사를 상대로 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자기의 계열회사로부터는 어음결제기간이 긴 어음으로 받으면서 비계열회사로부터는 선어음으로 받는다거나 어음결제 기간이 짧은 어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해 주는 행위가 있다.

또한 자기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역(逆)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행위가 있다.

둘째,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앞의 대금결제 조건에

서 예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계열회사에게는 싼 가격으로, 그리고 비계열회사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든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거꾸로 자기의 계열회사로부터는 비싼 가격으로, 그리고 비계열회사로부터는 싼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자기의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보다 더 유리하게 해 주는 행위가 있다.

셋째, 기타의 형태로는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함을 이유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거절한다거나,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계열회사에게 공문 또는 구두 지시나 각종 회의를 통하여 그 특정 계열회사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거나 그 특정 계열회사에게 상품을 우선 판매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

앞의 첫째, 둘째에 예시된 행위를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화하였다 하여 어느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예컨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불문하고 구매량이나 판매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타당성 있게 차이를 두는 경우라든가, 수송 거리나 수송 방법 등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 가격의 인상 시기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시기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별, 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이 겉으로는 동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료나 디자인, 그리고 생산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서 발생하는 차별 등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시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7 (주)경향신문사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건

1995. 10.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07광고649

사건 내용 (주)경향신문은 주간지인 「TV타임즈」를 창간하여 판매함에 있어, 이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95. 7. 10 자 일간스포츠 등의 광고를 통해 창간호(95.7.20. 발행, 권당 2,000원) 1권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선착순으로 '무선호출기' (10,000대, 대당 8,750원)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주)경향신문이 자기의 상품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으므로 이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고시 제1995-1호, 이하“경품고시”라 함) 제3조 제1호의 소비자 경품류 제공 행위에 해당되며, (주)경향신문이 제공한 경품류와 관련한 경품부 상품의 거래가액은 2,000원(「TV타임즈」1권)이고, 경품류가액은 (주)경향신문이 제공한 경품인 무선호출기가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경품고시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경향신문의 구입 가격으로 인정되는 7,000원에 동 가격의 25%를 가산한 8,750원이 된다.

따라서 경품고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경품부 상품의 거래가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에 소비자 경품류의 가액 한도는 3,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주)경향신문이 제공한 경품류가액(8,750원)은 적법한 가액한도(3,000원 이하)를 5,750원 초과하였음이 인정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경향신문에게 적법한 소비자경품류

의 가액 한도를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본건 위반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각 1회 공표하도록 하는 범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자기가 만든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게 되며, 이와 같은 판매 전략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고객을 유인한다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여 고객을 유인한다거나,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불량하다고하거나 그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기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고객을 유인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당해 상품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당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에 현혹되어 유인당한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중에는 본건의 경우 처럼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는 행위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경품류'라고 분류하고 경품류의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를 경품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품류'라 함은 덤으로 주는 물품이나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이러한 '경품류'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화장품, 무선전화기, 자동차 등의 물품은 물론 해외 여행권, 상품권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품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경품류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상 경품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경품고시상 경품류 제공 한도는 경품부 상품의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경품부 상품의 거래 가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경품류 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즉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가격(본건의 경우에 잡지 1권의 가격)을 가리켜 '경품부 상품의 거래가액'이라 한다.

본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경품류에 해당되는 바, '소비자 경품류'란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하며, 경품고시상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액한도는 경품부상품의 거래 가액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경품부 상품의 거래 가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는 3,000원 이하의 경품류를, 그리고 경품부 상품의 거래 가액이 30,000원 이상인 경우는 경품부 상품의 거래 가액의 10% 이하가 되는 가격의 범위내에서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되, 최고 10만원 이하의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8 (주)진로종합유통의 거래강제 행위 및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1995.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9512경축1173

사건 내용 (주)진로종합유통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회사가 정한 특정 기간에 상품권 권유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부서장 회의에서 영업지원부서장 등으로 하여금 전체 직원 판매 목표액을 시달하게 한 후, 부서별로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구두로 정하도록 하고, 다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원별 매출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부여된 매출 목표중 직원이 판매처를 즉시 찾을 수 없는 금액(상품권)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친지, 거래처 등에 판매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94. 4. 28.자로 직원별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상품권 판매부서외의 사원에게까지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진로종합유통은 자기의 지하 스넥코너에 입점한 신리명과 외 37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하한선을 설정하고,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이 매출 하한선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백화점 수수료율 17~25% 보다 높은 18~41%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상품판매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입점사업자의 상품 판매대금을 감액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퍼마켓(식품 판매코너)에 입점한 2개 사업자(꽃나라, 영동농산)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 매출하한선에 미달된 경우 당초 계약된 백화점 수수료율 15~23% 보다 높은 16~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상품 판매대금을 감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특정 매입업체인 혜영유통, 하우스테크에 대해서도 매출하한선에 미달된 경우에 당초 계약된 백화점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상품 판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심결요지**》 먼저 (주)진로종합유통이 자기의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상품권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지원 부서장이 직원들의 판매 목표액을 시달하여 직원별로 목표액을 책정하도록 한 점과 부서장이 직원에게 부여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달된 금액 만큼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재하게 하여 친지나 거래처 등에 판매하게 한 결과 일부 직원의 경우 일일 외상매출액이 21백만원에 이르는 등 직원들이 애사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직원별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상품권판매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주)진로종합유통은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는 (주)진로종합유통이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보면, 백화점수수료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중 임의로 매출하한선을 설정하고 그에 미달된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백화점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인 입점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

(주)진로종합유통의 이러한 행위는 입점업체들의 경우에 일단 입점한 이상 투하자본의 회수 문제라든가, 다른 백화점에 입점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기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진로종합유통에 대하여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거래강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중지명령과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으로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증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7백만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다.

해설 사업자들이 자기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자기의 사원들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게 강제성을 띠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중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되어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해 행위의 '부당성'과 '강제성'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판매영업 사원들에게 고객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본건의 경우에 상품권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원들에게 고객을 상대로 해서 상품권을 많이 판매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사업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많이 판매해야 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부당성'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단순히 자기의 사원들에게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을 많이 구입해 주도록 권유하는 것이거나, 자기 사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원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사원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다는데 있으며, 나아가 관련이 있는 하도급업체 등에 강제로 판매하여 당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쟁사의 상품판매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사원판매 행위를 함에 사용하고 있는 강제수단으로는 자기의 상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을 봉급에서 공제한다든가, 그 구입 실적을 별도로 관리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그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방법, 높은 목표량을 설정해 주고 그 실적을 점검·관리하여 독려하는 등 사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수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원판매 행위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증빙자료나 정황 등을 토대로 사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임할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진로종합유통이 행한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는 백화점업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이다. 대형 유통조직으로서 특징을 갖는 백화점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에 충분한 갖가지 상품과 스포츠, 오락, 문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소비자가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그만큼 좋아 백화점의 점포를 임대하여 입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입점한 후에도 백화점측의 지시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입점업체들의 거래상의 지위는 백화점측에 비해 열등하다.

이 때문에 백화점이 입점업체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당초에 약속된 점포 위치를 백화점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든가, 본건의 경우 처럼 매출액이 낮을 경우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수수료율은 당초에 약정한 대로 적용되 수수료 목표액에 상응하는 매출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그 매출 목표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하여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